

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15- 호

서울특별시 중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「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.

2015년 9월 30일

서울특별시 중구청장

서울특별시 중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1. 개정이유

- 고령화 사회에 따라 노인복지 수요는 증대되고 있으나 저금리로 인해 노인복지기금 이자수입이 감소되어 매년 기금 사업비는 축소되고 있는 바, 지역 어르신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및 사회참여 촉진을 위한 사업비 확보를 위해 『서울특별시 중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』를 일부 개정하고자함

2. 주요내용

- 제5조 4항에 규정한 기금사업 지원금 범위 변경
 - 노인복지기금 지원금 범위를 “기금 적립금의 당해연도 이자수입”에서 “기금 적립금의 이자수입”으로 변경

3. 의견제출

-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0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(참조: 사회복지과장, 주소: 서울특별시 중구 창경궁로17(예관동), 문의전화: 3396-5364, FAX: 3396-8732, 메일: chang1626@junggu.seoul.kr)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 -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(찬·반 여부 및 그 사유)
 - 성명(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
- 첨부 : 1. 서울특별시 중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.
2. 신·구조문 대조표 1부. 끝.

신 · 구조문 대조표

서울특별시 중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중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5조(기금의 운용관리) ④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금은 기금 적립금의 이자수입 범위에서 지원하여야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현 행	개 정 안
제5조(기금의 운용관리)① (생 략) ② (생 략) ③ (생 략) ④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금은 <u>기금 적립금의 당해연도 이자수입 범위 안에서</u> 지원하여야 한다.	제5조(기금의 운용관리)① (현행과 같음) ② (현행과 같음) ③ (현행과 같음) ④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금은 <u>기금 적립금의 이자수입 범위에서</u> 지원하 여야 한다.